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및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 및 예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마일리지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호)
-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3호)
-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규정 신설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우리 구(區)는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봉사자 사기진작 및 인정·격려를 위

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주도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민관합동 봉사단과 자원봉사 day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장에서도 318명의 자원봉사자 인력이 배치·활동하였으며,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여 그들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보상 제도 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0조에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자원봉사마일리지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중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안 제20조는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목적, 적립 대상, 적립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대상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 신설,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규정 신설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본 일부조례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간병서비스 지원,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은 자원봉사 활동의 대가 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의 의의를 가지므로 자원봉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음.
- 서울시 자치구 중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는 곳은 양천구, 동작구

2곳으로써, 양천구에서는 누적 봉사활동 실적이 5,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2024.6.27.)하여 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추후 소관부서에서는 간병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될 자원봉사 시간 기준(누적 기간, 기준 시간 등), 지원 방법(간병서비스의 범위, 지급 방법, 지급 금액 상한 등)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사기 진작의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로 운영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서대문구 2곳이며, 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대상 인원과 그에 따르는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 구(區)의 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 1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총 4,652명으로 그들의 총 봉사시간은 23만 7,532시간임. 즉, 자원봉사 실적 1시간이 1,000마일리지로 교환 가능하며 1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지므로 모든 10시간 이상 봉사자가 신청한다면 소요 예산은 약 2억3천만원이 예상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제도화하여 봉사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그 구체적인 수혜 대상 범위, 금액 상한, 사용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 규정 후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더해 소관부서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증 발급과 공공시설 이용료 감경 혜택 등 지원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도입 시 관리와 운용을 위한 추가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6
----------	-----

발의연월일: 2025. 5.

발의자: 전승관·김지연·신흥식
이규선·우경란·최봉희
유승용·이예찬 의원
(8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및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 및 예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마일리지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호)
- 나. 간병서비스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3호)
- 다. 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규정 신설 (안 제20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필요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마일리지”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병서비스 지원: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제공할 수 있다.

- ②직전 연도에 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는다. 이 경우 1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 ③자원봉사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 지역화폐 교환,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마일리지 적립 한도, 적립 주기, 유효기간, 사용 방법, 환수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19조(자원봉사자 우대)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자원봉사마일리지”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u></p> <p>제19조(자원봉사자 우대)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간병서비스 지원: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u></p> <p><u>제20조(자원봉사마일리지 운영)</u></p> <p><u>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u></p>

제공할 수 있다.

②직전 연도에 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는다. 이 경우 1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③자원봉사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 지역화폐 교환,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마일리지 적립 한도, 적립 주기, 유효기간, 사용방법, 환수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